

'90년대 油價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辛容三
(極東精油 업무부)

1. 머리말

'82년 3월 정유5사 평균유가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유사업에 대한 정부의 油價관리제도 및 油價정산제도는 점진적으로 체계화되어 왔으며, 가격자유화 유종의 확대를 통하여 그 관리대상도 축소하여 왔다.

정유5사 평균유가관리제도는 사별 경영개선 노력을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기여하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 규모의 불경제성과 미약한 경쟁력을 도와시함으로써 일부 정유사에 누적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에서 국내石油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정유사별 경제시설의 증설을 허가함으로써 해소되는 듯 싶었으나, 국내石油수요의 경질화 및 저유황 유화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重質油 분해시설 및 脱黃시설 등 첨단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현행 油價관리제도의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5사 평균비용기준의 획일적 유가관리로 요약되는 현행 油價관리제도는 사업성이 상이한 첨단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90년대에는 동투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새로운 油價관리제도가

사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油價관리제도의 현황을 개관해본 후 重質油 분해시설의 경제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여 '90년대의 유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국내 油價관리제도의 현황

현행 국내油價제도는 정부의 통제가격제도와 정유5사 평균유가관리제도로 집약되어질 수 있는 바, 이들 제도를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통제가격제도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은 석유사업법에 의거하여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유종별,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이 고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

油價 자유화 현황

| | 가격 자유화 유종 | 물량 비율 |
|----------|---------------------|-------------|
| 1983. 2 | 제트유, 용제 | 0%→ 3.7% |
| 1988. 11 | 아스팔트 | 3.7%→ 5.4% |
| 1989. 3 | 나프타, 고급휘발유 군용휘발유 | 5.4%→ 18.3% |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가격자유화 유종을 확대하여 왔는 바, '89년 3월 이후 자유화 유종의 물량비율은 18.3%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율은 확대 되어 갈 전망이다.

(2) 정유5사 평균 유가관리제도

가. 정유5사의 평균수익 및 비용관리

정부는 정유사의 수익 및 비용을 사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5사의 평균수익 및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표준으로 보고 油價관리 및 유가정산시 적용하고 있다.

「정유5사 평균수익 및 비용관리」의 주목적은 사별 경영개선노력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별 원유정제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대등한 경쟁 판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별 손익 왜곡현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별 원유정제능력 현황

(단위 : 천B/D)

| | 油公 | 湖油 | 京仁 | 雙龍 | 極東 | 計 |
|-----------------|-----|-----|-----|-----|-----|-------|
| 현행경제능력 | 280 | 380 | 60 | 60 | 60 | 840 |
| 향후증설계획 (기허가) | 95 | - | 100 | 100 | 100 | 395 |
| 증설후 능력 | 375 | 380 | 160 | 160 | 160 | 1,235 |

나. 정유5사의 적정이윤관리

정부는 정유5사가 정유사업에서 기득할 수 있는 이윤 구도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대이익 향유를 방지하고 있다.

- 정유 5 사의 적정 허용이윤 : 정유사업 자기자본의 세전 16.5% (재평가 적립금, 배당금 제외)
- '89년도 정유 5 사의 적정이윤금액 : 1,063억원

다. 油價정산제도

油價정산이란 정부가 油價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용하였던 수익 및 비용의 추정치가 정유5사의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한 과대이익 또는 부족이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의 환수 또는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후 정산을 말한다.

油價정산이익의 환수는 석유사업기금의 인상이나 석유제품가격의 인하를 통하여 대개 향후 1년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라. 석유사업기금제도

현재 油價관리제도는 원유도입단가 18\$ / B을 기준으로 석유류제품 가격을 설정하고, 실도입단가와 기준도입단가 (18\$ / B)의 차이는 전액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보전)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유가완충기능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기금의 油價완충기능은 단기적인 FOB의 등락이 국내석유류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국내물가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자부는 거의 매월 1회씩 원유도입단가 및 환율변화등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을 조정해 오고 있다.

3. 중질유 분해사업의 개요

(1) 重質油 분해시설이란

重質油 분해시설이란 HS B-C油와 같은 중질유를 원료로 고온 고압하에 수첨분해 및 열분해 등을 통해 저유황 경유등의 경질유분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열분해방식, 접촉분해방식, 수소화분해방식, 용매추출방식 및 부분산화방식 등이 있다.

(2) 重質油 분해사업의 개요

重質油 분해사업이란 중질원유 도입에 따른 원유비

社別 중질유 분해시설 건설계획 / 보유현황

| | 油公 | 湖油 | 京仁 | 雙龍 | 極東 |
|------------|---------|---------|---------|---------|------------|
| 경제능력(천B/D) | 30 | 30 | 30 | 30 | 34 |
| 건설기간 | '87~'91 | '89~'92 | '87~'93 | '89~'92 | '84~'89 |
| 종류 | 수소화분해 | 접촉분해 | 수소화분해 | 접촉분해 | 수소화분해, 열분해 |

절감액과 중질유 분해에 따른 판매수익 개선금액을 수익으로 하고,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에 따른 정제비(감가상각비 및 시설자금이자등) 증가금액을 비용으로 하여 영위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중질유 분해시설 가동에 따른 손익변화 항목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 ① 중질원유 도입에 따른 원유비 절감액
 - ② 중질원유 정제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액
 - ③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에 따른 정제비 증가액
 - ④ 중질유 분해시설 가동에 따른 판매수익 개선액
- 정부의 油價 관리 차원에서 ① 및 ② 항목은 단순 정제부문으로 분류되어 현행 유가표('90. 2. 2 이후, 기금 : 0.0 \$ /B)에 반영되어 있으며, ③ 및 ④ 항목은 중질유 분해부문으로 분류되어 동 유가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4. '90년대 油價 관리제도 개선방안

(1) 重質油 분해사업의 경제성 제고

중질유 분해사업의 油價 관리방식에는 단순정제사업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과 중질유 분해사업자를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별되는 바, 이를 방식을 중질유 분해사업의 경제성 제고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중질유 분해사업을 현 油價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식

중질유 분해사업은 현 석유시황상 그 경제성이 취약하

여 동 사업이 정유5사 평균유가시스템에 포함될 경우 단순정제시설만을 가동중인 회사(極東을 제외한 정유4사)는 일종의 불로소득인 반사이익을 향유케 된다.

이러한 반사이익은 구체적으로 석유사업기금의 인하형태로 나타나는 바, 동 기금인하분은 별도기금("정유시설 현대화사업기금"으로 가칭)으로 적립하여 정유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투자유인 제공을 위해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질유 분해사업을 현 유가시스템에 포함시키되, 이에 따른 기금인하분은 별도로 정유시설 현대화사업기금으로 적립시켜 특정 용도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석유사업기금의 이원화

향후 석유사업기금 = 일반기금 + 정유시설 현대화사업기금

나. 重質油 분해사업자를 별도 관리하는 방식

중질유 분해사업은 저유가하에서는 경제성이 취약한 반면, 고유가가 형성될 경우에는 그 경제성이 급격히 개선되어지므로, 동 사업은 단순정제사업에 비해 경제성의 기복이 크다.

따라서 단순정제사업은 단순정제사업끼리, 중질유 분해사업은 중질유 분해사업끼리 경쟁관계를 둘으로써 정유5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유5사를 「단순정제시설만을 가동중인 회사」와 「중질유 분해시설도 가동중인 회사」로 양분하여, 양분된 회사 그룹별로 유가표를 산정하여 해당사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타정유4사는 향후 2~4년 이내에 중질유 분해시

정액기금제도 및 정률기금제도 장·단점 비교

| 정액기금제도 | | 정률기금제도 |
|--------|--|---|
| 정의 | 원유 및 제품도입시 유종 및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체 물량 기준으로 일정액의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 | 원유 및 제품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률의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사업기금제도 운영의 간편 - 의견상 평등한 기금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별 가치가 고려되어진 기금부과로 조세원칙에 합치 - 저가원유도입에 대한 동기 부여 - 중질유분해시설 투자동기 제고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금부과로 유종간 상대적 기금 불균형 초래 - 저가제품에 대한 상대적 고액 기금부과로 저가유종의 수입 회피에 따른 유종간 수급 불균형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제품에 대한 고액 기금부과로 고가유종 도입 회피에 따른 유종간 수급 불균형 우려 |

설을 완공할 계획이므로, 향후 2~4년 동안만 油價(기금) 관리방식을 이원화하면 될 것이며, '94년 이후에는 다시 油價(기금) 관리방식의 일원화가 가능할 것이다.

다. 기타 중질유 분해사업 경제성 제고 방안

환경정책과 부응하여 저유황 석유제품과 고유황 석유 제품간의 가격격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중질유 분해용 원유에 대한 석유사업기금의 감면 또는 환급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重質油 분해시설을 완공한 회사의 가동률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부 석유제품의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석유사업기금 제도의 개선

석유제품 수입시 유종별 상대적 가치(가격)를 고려하지 않는 정액의 기금부과는 국내석유수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의 비경제성을 조장하여 왔으므로, 유종별 차등기금 징수제도(정률제 또는 정률식 정액제)의 도입을 통해 국내석유수급의 원활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적정허용이윤의 개념 재정립

현행 정유사업의 적정허용이윤은 정유사업 자기자본에서 재평가 적립금 및 배당금이 차감된 유가기준 자기자본의 세전 16.5%(세후 약 10%)로서 그 절대규모가 부족 하며, 그것마저도 비용부인등을 통해 전액 향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유업계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증가가 전액 유가 또는 기금으로 환수됨에 따라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정허용이윤의 개념 재정립과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제공등을 통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5. 맷는말

현행 油價관리제도하에서는 중질유 분해사업의 경제성이 취약하여 重質油 분해시설을 가동중인 회사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시설을 건설중인 회사는 그 완공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重質油 분해시설의 건설은 향후 국내石油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석유정책시설인 바, 현행 油價관리 제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상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역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油價관리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견지에서 '90년대 油價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하에 重質油 분해시설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열거하였는 바, 이러한 첨단 석유정책시설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향후 정부, 정유업계 및 에너지관련 연구기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 도서안내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9**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